##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문정복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602 발의연월일: 2024. 6. 18.

발 의 자:문정복・김한규・윤준병

민형배 · 강준현 · 김주영

강유정 · 김용민 · 김영배

강경숙 · 위성락 의원

(11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보행에 장애가 있는 사람이 신청하는 경우 장애인전용주 차구역 주차표지를 발급하도록 하고, 발급 대상 및 절차 등은 시행령 으로 정하고 있음.

그런데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활동지원 사와 같이 보행에 장애가 있는 사람의 이동보조 업무를 수행하는 사 람의 경우 효과적인 이동보조를 위해선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할 필요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 발급 대상 에서 제외되고 있는 상황임.

이에 개정안은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 표지 발급 대상 일부를 법률에 상향하여 규정하고, 「장애인활동 지원 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활동지원사, 「노인복지법」 제39조의2 에 따른 요양보호사 등도 주차표지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7조제2항).

법률 제 호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 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2항 중 "보행에 장애가 있는 사람이"를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자가"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1.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으로서 보건복지 부장관이 정하는 보행상 장애가 있는 사람
-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국가보훈부장관 이 정하는 보행상 장애가 있는 사람
  - 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한 국가유공자 중 상이등급 판정자
  - 나.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 4조에 따라 등록한 고엽제후유의증환자
  - 다.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등록한 5 ·18민주화운동부상자
- 3.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과 「주민등록법」 제7조에 따

른 주민등록표상의 주소를 같이 하면서 함께 거주하는 배우자, 직 계존비속, 직계비속의 배우자, 형제자매, 형제자매의 배우자 또는 자녀

- 4.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국내거소신고를 한 재외동포나 「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라 외국인등록을 한 외국인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보행에 장애가 있는 사람
- 5.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활동지원사, 「노인복지법」 제39조의2에 따른 요양보호사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보행에 장애가 있는 사람의 이동보조를 수행하는 사람

####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7조(장애인전용주차구역 등)	제17조(장애인전용주차구역 등)
① (생 략)	① (현행과 같음)
② 국가보훈부장관과 특별자치	2
시장・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구청장은 <u>보행에 장애가</u>	<u>다음 각 호의 어</u>
<u>있는 사람이</u> 신청하는 경우 장	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할 수	
있음을 표시하는 장애인전용주	
차구역 주차표지를 발급하여야	
한다.	
<u>&lt;신 설&gt;</u>	1.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으로서 보
	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보행
	<u>상 장애가 있는 사람</u>
<u>&lt;신 설&gt;</u>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국가보
	훈부장관이 정하는 보행상 장
	<u>애가 있는 사람</u>
	<u>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u>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
	에 따라 등록한 국가유공
	<u>자 중 상이등급 판정자</u>
	나.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

<신 설>

<신 설>

<신 설>

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등록한 고엽제후유의증환자

- 다.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등록한 5・18민주화운동부 상자
- 3.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과 「주민등록법」 제7조에 따른 주민등록표상의주소를 같이 하면서 함께 거주하는 배우자, 직계존비속, 직계비속의 배우자, 형제자매, 형제자매의 배우자 또는 자녀
- 4.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국내거소신고를 한 재외동포나 「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라 외국인등록을 한외국인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보행에 장애가 있는 사람
- 5.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활동지원사, 「노인복지법」 제39조

	의2에 따른 요양보호사 등 보
	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보행
	에 장애가 있는 사람의 이동
	보조를 수행하는 사람
③ ~ ⑦ (생 략)	③ ~ ⑦ (현행과 같음)